

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관련 법령 개정 주요내용

(2004년 12월 개정,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)

1. 생산자 재활용 의무총율의 산정 · 고시

2004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스티로폴 포장재의 재활용의무 생산자에게 업체별 200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04년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였으나, 2005년부터는 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고, 개별 업체는 출고량에 재활용 의무율을 곱한 양을 이행해야함

- 2005년도 스티로폴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율(61.3%) 고시
- 개별업체의 2005년도 재활용의무량

$$= 2005년 출고량 \times \text{스티로폴 재활용의무율}(61.3\%)$$

2.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

2004년도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하였으나, 2005년부터는 당해연도 1월말까지 제출

· 다만,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 · 포장재의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(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)부터 30일 이내(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)에 제출할 수 있다

·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상반기수입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제품(포장재)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당해연도 7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

-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: 2003년도 연간매

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· 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.

〈별표 4〉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업종 및 규모

반침접시 등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 · 축 · 수산물의 판매업 및 수입업	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상반기 매출액 5억원 이상인 판매업자, 전년도 연간수입액 3억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상반기 수입액 1억 5천만원 이상인 수입업자
중이팩 · 유리병 · 금속캔 · 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, 세제류, 화장품류, 의약품류, 부탄가스용, 살충 · 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	
폴리스티렌페이퍼(PSP) ·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 · 폴리프로필렌(PP)재질의 반침접시 · 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	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상반기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제조업자, 전년도 연간수입액 3억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상반기수입액 1억5천만원 이상인 수입업자
포함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	
발포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	

※상반기매출액 및 상반기수입액이라 함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 및 수입액을 말한다.

3.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

한국환경자원공사는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2조의 규정에

의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,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4. 재활용의무를 산출기준(별표 5)

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·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도(이하 "1차 연도"라 한다)에는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, 수출·수입량, 재활용시설의 규모, 재활용기술의 개발 상황,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(이하 "재활용요인"라 한다)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0.9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5. 행정사항

〈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자의 책무사항〉

- 매년 3월말까지
- 전년도의 제품 포장재의 출고 및 수입실적서(별지 제9호의 서식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결산보고서 등 제품, 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
〈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시 제출면제〉

- 매년 1월말까지

-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(별지 제10호의 서식)
- 재활용시설(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의 재활용시설)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
-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의회수운반계획(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)
-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)

공제조합 가입업체는 제출 면제

- 매년 3월말까지
-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(별지 제13호 서식)
-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
- 제품 포장재의 회수관리대장 사본(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)

·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의 제조 수입관리대장(별지 제18호 서식)

-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의 회수, 재활용관리대장(별지 제19호 서식):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,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의 제품 포장재의 회수관리대장 사본)

〈재활용사업자의 책무사항〉

장부의 기록 보존

- 위탁받은 제품 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(별지 제19호 서식)